

清朝의 服飾政策 理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deology of the Costume Policy of Qing Dynasty(清)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전통패션문화전공,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박현정* · 이순원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Jeonju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Jung Park* · Soon-Won Lee

(2001. 8. 1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the role and meaning of costumes in feudal dynasties through Ideology, Content, and Consequence of Costume Policy of Qing. And this is to investigate the Ideology of Costume Policy as the first step.

The ideology of the costume policy of Qing dynasty stemmed from the ethnic identity. *Huáng-tà-jǐ*(皇太極) was not only the emperor, but the Qing's principle costume policymaker. He thought that the *Mǎn* people's horse-riding and archery was the basis of their nation and their costume was vital to these abilities. Therefore if they changed to the large sleeve costume of the *Hàn* people, they would lose their ethnicity. *Huáng-tà-jǐ*'s succeeding emperors continued the ideology of retaining ethnicity.

Key words: Costume Policy, Qing, Ideology of the Costume Policy, ethnic identity ;
복식정책, 청, 복식정책이념, 민족정체성

I. 서론

고대 중국의 복식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통치이념이 내재된 규범 형식이다. '통치'와 '복식'이라는 두 개념을 관련시킨 가장 오래된 기록은 『易經』으로 衣裳 제정 및 통치에 있어서 모두 乾坤의 질서를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 『周禮』에 나타난 최초의 복식제도는 천자 이하 착용자 신분에 따라 冕服의 재료·색·문양·치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였다. 신분

과 등급에 따라 복식의 재료와 장식을 규제하는 복식제도는 비록 세부 규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봉건질서를 유지하고 통치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대대로 답습되어 왔으며 한국과 일본 등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대 통치자들은 "한 왕조가 흥성하려면 반드시 찬란한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²⁾는 통치사상을 가지고 건국 초기에 복식제도를 제정하였다. 이는 고대 舜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제도와 형벌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때 맨처음 복식제도를 거론하였던³⁾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복식제도 시행 자체를 중앙집권을 공고히 하는

1) 『易經』系辭下 "黃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 蓋取之乾坤." 『後漢書』輿服志 서문에 의하면 乾坤을 취하였다는 것은 上衣에 하늘의 색인 玄色을, 下裳에 땅의 색인 黃色을 사용한 것을 말함이다.

2) 『大清世祖章皇帝實錄』卷10 第1-2頁 順治元年 10월 丙寅 "工科給事中朱鼎(≡清)奏言, 今皇上建極錫福, 兆民用康. 顧一代之興, 必制作燦備"

중요한 행보로 본 것이다.

중국 역사에서 북방 異民族⁴⁾과 中原 漢族⁵⁾과의 관계

3) 『尚書』益稷篇 “子欲觀古人之象，日月星辰山龍華蟲作會，宗彝藻火粉黼黻絺繡，以五采彰施於五色，作服，汝明”(내가 옛 사람의 의복 모양을 본떠 옷에 日·月·星辰·山·龍·華蟲 문양을 그리고, 宗彝·藻·火·粉·米·黼·黻 문양을 수놓아 五彩로 하여 다섯가지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을 만들테니 그대들도 이를 받들어 시행토록 하라)

4) 중국사에서 흔히 말하는 ‘정복왕조’라는 용어는 Wittfogel이 처음 사용하여 보편화된 것이다. Wittfogel은 중국사 전체를 ‘전형적인 중국왕조’의 시기와 ‘정복왕조(Conquest Dynasties)’의 시기로 구분하고, 遼·金·元·清 왕조를 정복왕조로 보았다. 한편 漢族이 아니면 중국의 일부를 정복하고 지배하였던 五胡제국과 北魏는 일시적인 정복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화북지역으로 내려와 살다가 그곳에서 국가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원·청과 같은 전형적인 정복왕조와 구별하여 ‘잠입왕조(Infiltration Dynasties)’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김홍동, 『蒙古帝國의 形成과 展開』, 『강좌중국사Ⅲ』, 서울:지식산업사, 1999, p.243)

본 연구에서는 Wittfogel의 ‘전형적인 중국왕조’에 해당하는 왕조에 대해서는 ‘漢族 왕조’, 漢族이 아닌 북방 소수민족이 중국에 들어와 세운 왕조에 대해서는 정복과정과 관계없이 ‘異民族 왕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5) ‘中原’이란 해발 1,000미터 미만의 지역으로 黃河와 長江 중하류의 평원지대로서 농업문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秦의 통일은 바로 이 중원 지역의 통일이었다. ‘漢族’이란 본래 ‘漢’이라는 왕조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나, 異民族들의 통치가 시작된 위진남북조시대부터 기존에 중원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漢人’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용되었다.(朴漢濟, 『新胡漢體制論』, 『魏晉隋唐史研究』, 第4輯, 1998, pp.29-42) 본 연구에서는 이민족 왕조의 對稱으로 ‘漢族’·‘漢人’을 사용하고자 한다.

6) 匈奴·鮮卑·靺鞨·羌·氐·烏桓 등이 중원지역을 향해 들어온 五胡十六國시대를 제외하더라도 중국 북쪽을 통일한 北魏부터 隋 통일 전까지 남북조로 대치한 약200년간, 宋 이후 북조 왕조이거나 전 중국 통일왕조였던 遼·金·元까지의 약240년간, 그리고 청조 약270년간을 모두 합하면 秦의 통일(기원전221) 이후 신해혁명(1911)에 이르는 약2,100년 중 이민족 왕조의 통치 기간은 1/3에 해당된다.

는, 이민족 왕조의 통치기간이 중국 전체 역사의 삼분의 일에 해당한다⁶⁾는 정치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복식문화를 가진 민족간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복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복식사적 의미도 크다 할 것이다.

중국 역대 이민족 왕조 통치자들 역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복식제도를 제정하기도 하고 특별한 복식의 착용 또는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鮮卑族 왕조인 北魏와 滿族 왕조인 清의 경우, 통치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복식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들 이민족 왕조의 服飾政策⁷⁾은 각각 그 양상을 달리하였다.⁸⁾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족 왕조이자 중국 마지막 봉건 왕조인 청조의 복식정책 이념, 내용, 결과를 통해 봉건 왕조에서의 복식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함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청조 황제들이 통치권 확립을 위해 채택한 복식정책 이념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고대 중국에서의 복식정책에 대한 통치자의 관여도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滿族 왕조의 복식정책 이념은 ‘後金’⁹⁾ 시대의 太宗 皇太極에 의해 확립되어 그 후 역대 청조 황제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따라서 II 장에서는 太宗 皇太極이 清朝 복식정책 이념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皇太極이 세운 복식정책 이념을 규명한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皇太極에 의해 확립된 복식정책 이념이 이후 역대 황제들에 의해 계승되어간 현상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7) 본 논문에서 ‘복식정책’은 통치자의 의도가 반영된 복식에 관한 諸 정책을 포괄한다.

8) 선비족 왕조인 북위는 지배민족의 복식을 버리고 피지배민족인 한족의 복식을 취하여, 관리들의 복식뿐만 아니라 모든 선비족에게 한족 복식으로의 개혁을 명령하였다.(박현정·이순원, 『北魏 孝文帝의 服飾改革에 대한 연구』, 『服飾』43, 1999 참고)

9) 중국 역사상 ‘後漢’, ‘後燕’ 등의 ‘後’는 이전의 같은 이름 왕조와 구분하기 위해 후대 史家들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통치자 스스로 ‘後’자를 붙인 努爾哈齊의 ‘後金’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종이 국호를 ‘大清’으로 바꾸기 이전까지의 滿族 정권을 편의상 ‘後金’이라고 칭한다.

II. 太宗 皇太極의 정치적 배경

清朝의 본격적인 중국 통치는 順治원년(1644)에 중원과 요동지방의 경계 지역인 山海關을 통과(이하 入關이라 함)하여 明의 수도인 北京에 入城하면서부터 시작되지만, 滿族의 漢族 통치는 1616년 太祖 努爾哈赤(누르하치)가 後金을 건립할 때로 소급될 수 있다.¹⁰⁾ 努爾哈赤는 明朝의 建州左衛(지금의 요녕성 開原 이북) 指揮使였던 建州女眞族 猛哥鐵木兒의 후손으로, 1609년 초기에 북경으로 조공 보내는 것을 멈추고 3년 만에 명의 중요 전진기지인 요양을 점령하여 명의 병력을 요동반도로 몰아낸 후 흑룡강의 동쪽 땅을 모두 지배하였다.¹¹⁾ 明 萬曆44년(1616)에 努爾哈赤는 赫圖阿拉에서 天命汗을 자칭하였다. 초기 努爾哈赤 세력은 정식 國號가 없었으며 朝鮮 등 외국에 보내는 서신에, 자신을 '建州國汗', '後金國汗', '大金國皇帝' 등으로 칭하였다. 努爾哈赤가 '後金', '大金' 등의 국호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12세기 金朝의 후계자임을 인식시킴으로써 여진족의 역사상 과업 계승을 명분 삼아, 각 부 여진인을 단결시키려는 정치적 의의를 지닌다.¹²⁾ 제2대 太宗 皇太極은 天聰9년(1635)에 이르러 그의 백성을 총칭하는 용어로 '滿洲'를 채택하였으나¹³⁾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 '滿族'을 사용하기로 한다.

太祖 努爾哈赤는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틀을 갖추게 하였다. 당시 滿洲人은 여진 말을 했지만 몽골 글을 썼기 때문에 말과 글이 다름으로 인해 滿族 공동체 형성에 큰 장애가 되었다.¹⁴⁾ 1599년 努爾哈赤는 몽골 글을 字母로 삼

아 滿洲 문자를 만들었다.¹⁵⁾ 滿文의 창제는 만족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시킴으로서 민족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¹⁶⁾ 또한 전통적 여진족 습관법을 기초로 하면서 漢族의 법률문화를 흡수하여 後金 초기의 법률과 제도를 창건하였다.¹⁷⁾ 天命6년 4월, 都堂阿敦·副將 李永芳·毛右銘·漢人 八游擊에게 명하여 명나라의 각종 법규와 율례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적당한 것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였다.¹⁸⁾ 後金 당시에는 의복재료가 풍부하지 않았다. 努爾哈赤는 天命元年(1616) 정월, 汗으로 등극하자 전국에 양잠과 면화재배를 포고하였고¹⁹⁾ 天命8년에는 蟒緞·紬緞·補子 등을 짜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등²⁰⁾ 옷감 생산을 장려하여 방직업을 발전시켰다.

天命11년(1628) 8월 11일 努爾哈赤가 病死²¹⁾하고, 그의 여덟째 아들인 太宗 皇太極(太宗)이 汗位를 계승하였다.²²⁾ 太祖 努爾哈赤가 後金을 세우고 滿族의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太宗 皇太極은 중원

14) 韓耀旗·林乾, 『清代滿族風情』, 長春:吉林文史出版社出版, 1990, p.43

15) 『大清太祖高皇帝實錄』卷3 第1頁 乙亥(1599) 2月 辛亥朔 “上獨斷將蒙古字製爲國語, 頒行國中, 滿文傳布自此始” 이때 만들어진 滿文은 圈点이 없어 후대 사람들이 이를 ‘無圈點滿文’ 또는 ‘老滿文’ 이라고 한다.

16) 韓耀旗·林乾(1990), 전게서, p.45

17) 張晉藩·郭成康, 『清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遼寧人民出版社, 1988, p.413

18) 『滿文老檔(漢譯)』上(p.189) 天命6年 4月 3日 “著將明國所定諸項章典, 俱繕文陳奏, 以便去其不適, 取其相宜”

19) 『滿文老檔(漢譯)』上(p.44) 『滿文老檔(日譯)』I (p.68) 天命元年(1616) 正月 “是年, 始行養蠶, 推廣植棉於國中”

20) 『滿文老檔(漢譯)』上(p.414) 『滿文老檔(日譯)』I (pp.655-656) 天命8年(1623) 2月 十一日, 遣七十三人織蟒緞·紬緞·補子. 時汗覽所織蟒緞·紬緞·補子, 嘉獎曰, “於不產之地織此蟒緞·紬緞·補子, 乃至寶也. …”

21)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1 第4頁 天命11年 8月 庚戌 “太祖高皇帝崩”

22) 『清史稿』卷2 本紀2 太宗本紀1 “後知漢稱儲君曰皇太子, 蒙古嗣位者曰黃台吉, 音並闐合, 及即位, 咸以爲有天意焉”

10) 孫文良, 「論清初滿漢民族政策的形成」, 遼寧大學學報: 哲社版(瀋陽), 1991.1. pp.89-93

11) Wakeman, Frederic, Jr著, 김의경譯, 『중국제국의 몰락』, 서울:예전사, 1992, p.95

12) 『清代全史』第1卷, 瀋陽:遼寧人民出版社, 1995, p.326

13) '滿洲'라는 이름의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가들은 그것을 그의 선조의 이름 중 하나인 Manjusri와 연결시키고 있다. (Wakeman, Frederic, Jr著, 김의경譯 (1992), 전게서, p.89)

통치의 야망을 품고 後金을 초기 부족제적 성격으로 부터 봉건제적 중앙집권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滿族을 오랑캐(夷狄)라 하여 멸시하는 漢族의 華夷사상에 대처해야 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만족 내에서의 왕권을 강화해야 했다.

1. 華夷사상에 대한 대처

중원의 漢人에게는 이민족 출신은 중국의 정통 천자가 될 수 없다는 통념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민족 출신이면서 중원 통치의 야망을 가진 자는 이 화이사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華夷사상은 문화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발생한 한족과 이민족의 대립 개념이었으며, 華와 夷를 구분하는 '문화'란 詩·書·禮·樂 등 유교 경전에 집약된 '유교적 중국문화' 즉 禮敎 문화를 말한다.²³⁾ 華의 모든 생활영역에는 이 예교 문화가 깊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華는 종종 언어·풍속·생활양식·관습·외모 등에서 자신들과 다른 夷의 문화를 지적했고²⁴⁾ 특히 '被髮文身', '被髮衣皮', '衣羽毛' 등 복식에 관련되는 부분은 야만의 상징으로 강조되었다.

太宗 皇太極은 주변 소수민족 정권을 경시하는 儒家의 華夷사상에 대해 반격함과 동시에 滿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天聰3년(1629) 11월, 漢族 軍民에게諭하기를,

“만약 우리 나라(後金)를 너무 좁아 稱帝함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옛날 遼·金·元도 작은 나라였지만 帝業을 이루었는데 역시 그 稱帝함을 금하겠느냐?…어찌 한姓만이 명을 받고(受命) 영원히 불변할 이치라 하느냐? 天運

은 순환하는 하는 것이니… 천자였다가 폐위되어 필부가 되는 자도 있고, 또한 필부였다가 일어나 천자가 되는 자도 있다”²⁵⁾

고 하였고, 崇德4년(1639) 7월에도 崇禎皇帝에게 바치는 글에,

“옛부터 천하에는 한가지 성만 있는 것이 아니며 천운은 순환하는 것이니 몇 명의 帝가 있었고 몇 명의 王이 있었는가?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폐위된 자도 있었고 이미 이루었으나 다시 패망한 자도 있었다. 어찌 帝의 후손을 반드시 帝라 하고 王의 후손을 반드시 王이라 할 수 있겠는가?”²⁶⁾

라고 하였다. 皇太極은 중원 정권쟁탈전을 표방하며 帝業의 웅대한 이상과 포부를 선포하였고 天運의 순환으로 자기의 행동을 변호하였다.²⁷⁾

화이사상에 반격하는 한편 皇太極은 太祖에 이어 滿族의 구습을 개혁하고, 滿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天聰5년(1631) 7월에는 同族간의 혼인을 금하였고²⁸⁾ 天聰6년(1632)에는 巴克什達海에게 명하여 太祖 때 만든 滿文을 개선하여 圈點이 붙은 더욱 편리한 滿文을 만들었다.²⁹⁾ 동시에 皇太極은 滿族 전통 보존의 문제가 國運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제도에서 滿族의 특성을 유지하였다. 天聰8년(1634)에

25)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5 第29頁 天聰3年(1629) 11月 “若謂我國褊小, 不宜稱帝, 古之遼·金·元俱自小國而成帝業, 亦曾禁其稱帝耶?…豈有一姓受命, 永久不移之理乎? 天運循環, 無往不復, 有天子而廢爲匹夫者, 亦有匹夫而起爲天子者”

26)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47 第22頁 崇德4年(1639) 7月 “自古天下非一姓所常有, 天運循環, 幾人帝? 幾人王? 有未成而中廢者, 有既成而復敗者, 豈有帝之裔常爲帝, 王之裔常爲王者哉?…皇天無親, 善則培之否則傾之, 乃不易之理也”

27) 張晉藩·郭成康(1988), 전계서, p.415

28)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11 第19頁 天聰5年(1631) 7月 “所以嚴禁者, 以此乃古聖王之成法, 故今仿而行之耳. 前禁不許亂倫婚娶, 亦此意也”

29) 韓鐘旗·林乾(1990), 전계서, p.45

23) 小倉芳彦, 「華夷思想の形成」, 『思想』, 503호, pp.23-32 (박지훈(1990), 전계서, p.103에서 재인용)

24) 『禮記』王制 第5 “中國戎狄五方之民皆有性也 不可推移 東方曰夷 被髮文身 有不火食者矣 南方曰蠻 雕題交趾 有不火食者矣 西方曰戎 被髮衣皮 有不粒食者矣 北方曰狄 衣羽毛穴居 有不粒食者矣…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同”은 이런 인식을 총합한 예이다.(이성규,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문화과학사, 1999, p.120)

는 몽골이 그들의 언어를 버림으로서 국운이 쇠퇴하여짐을 지적하며 東北의 지명과 漢語화된 官名을 모두 만주어로 고쳤고,³⁰⁾ 崇德3년(1638)에는 滿族 특징을 유지하면서 종실귀족의 등급제도상에 상하등급을 규정하였다. 즉, “和碩親王·多羅郡王·多羅貝勒·固山貝子·固倫公主·和碩公主·和碩格格·多羅格格·固山格格·固倫額駙·和碩額駙·多羅額駙·固山額駙” 순의 등급이 수립되었는데³¹⁾ 和碩·多羅·固山·固倫 등은 滿族 종실의 등급 명칭이며, 格格은 공주, 額駙는 부마를 뜻하는 만주어의 한역이다.

2. 황제 권력 강화

後金 초기 통치체제의 기반은 八旗制였다. 팔기제는 滿族의 수렵관행으로부터 발전된 민족 고유의 군사조직이자 정치·사회·경제조직의 기능을 겸비한 것으로³²⁾ 旗는 努爾哈赤의 아들과 조카 중에서 선발된 和碩貝勒에 의해 이끌어졌다.³³⁾ 努爾哈赤는 天命7년(1622) 3월, 8명의 和碩貝勒에게 ‘公議國政’ 하도록 하였는데³⁴⁾ 이들은 모두 八旗의 旗主로서 각각 독립적인 경제적 분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록 皇太極이 汗位에 즉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大貝勒에 지나지 않았다.³⁵⁾ 따라서 왕권 강화를 위해 지배체제의 변화는 필수적이었다. 天聰3년(1629) 4월, 文館을 창설하여 초보적인 漢式 통치형태를 취하였으며, 天聰6년(1632) 정월에는 六部를 창설하고, 天聰10년(1636) 3월에는 文館을 다시 內三院으로 개편한다. 내삼원의 설치 이전까지의 八和碩貝勒에 의한 公議國政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

며, 이는 大貝勒의 세력을 차례로 삭감하면서 절대군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³⁶⁾ 天聰10년(1636년) 4월, 後金의 汗인 皇太極은 皇帝位를 선포하고, 국호를 ‘大清’으로, 연호를 ‘崇德’으로 바꾸었다.³⁷⁾ 崇德元年(1636) 5월에는 六部와 內三院을 대상으로 하는 都察院을 설립하여 八旗貝勒의 동정을 감시하고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III. 太宗 皇太極의 복식정책 이념

이민족 왕조 황제로서 화이사상에 대한 대처와 황제권력 강화라는 정치적 현안 속에서 皇太極은 민족 정체성에 기본 바탕을 두고 滿族 전통 복식 유지 및 滿族 복식에의 유교적 등급질서 반영이라는 복식정책 이념을 세우게 된다.

1. 滿族 전통 복식 유지

‘민족성’은 근원지가 같거나 유사한 사람들이 언어·종교·음식·전통·민속·음악·거주지역 등의 문화요소를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집단을 형성하는 의식³⁸⁾으로, ‘민족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동의어로 설명한 Anya Royce에 의하면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상징, 둘째 고정관념, 셋째 형태이다. 상징이란 행동을 유발하는 가시적 부호이고, 고정관념이란 갈등이 적은 범주를 말하며, 형태란 일정한 기준에 따른 행위와 연출의 양상과 방법을 말한다고 하였다.³⁹⁾ 이 중 상징에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의상·머리·장신구·신체적 특징을 들 수 있다. 淸朝의 황제 皇太極은 滿族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滿族 전통 복식이라는 민족의 상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崇德元年(1636), 後金의 복식제도를 漢人の 복식으로 개혁하자는 건의를 받은 황태극은 諸王貝勒에게

30)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18 第12-13頁 天聰8年(1634) 4月 辛酉 “上諭曰, 朕聞國家承天創業, 各有制度, 不相沿襲. 未有棄其國語, 反習他國之語. 事不忘初, 是以能垂之久遠, 永世弗替也. 蒙古諸貝子, 自棄蒙古之語, 名號俱學喇嘛. 卒致國運衰微.”

31)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42 第2-3頁 崇德3年 7月 壬戌

32) 조재덕, 『淸朝의 황제지배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 2

33) Wakeman, Frederic, Jr著, 김의경 譯(1992), 전게서, p.93

34) 孫文良(1991), 전게서, p.55

35) 조재덕(1996), 전게서, p.81

36) 조재덕(1996), 전게서, p.102

37) 『淸代全史』第1卷(1995), 전게서, pp.325-340

38) 『Encyclopedia of Sociology』, 1992, p.575

39) Anya Royce, 『Ethnic Identity; Strategies of Diversity』,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2, p.4 장준희(1998) 전게서, p.82에서 재인용

滿族 전통복식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崇德元年(1636) 11월, …전에 儒臣 巴克什達海, 庫爾纏이 누차 내게 만주 衣冠을 漢人 복식제도로 바꿀 것을 권고하였으나 나는 따르지 않았고 번번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짐이 비유를 들어보겠다. 예를들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 寬衣大袖을 입고, 왼쪽에 화살, 오른쪽에 활을 끼고 있다가 갑자기 적(碩翁科羅巴圖魯勞薩)이 들입하였다.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騎射를 폐하고, 寬衣大袖을 입는다면 다른 사람이 고기를 잘라 먹는 것을 기다리는 것, 또 왼손을 쓰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짐은 이 말을 자손 만대의 訓戒로 하고자 한다. 짐이 어찌 이치를 변경하려 하겠느냐. 후세 자손이 舊制를 잊고 騎射를 버리고 漢人 풍속을 따를까 두려우니 항상 이를 생각하라. 우리 土卒이 처음에 몇 명이었느냐. 騎射에 능숙하여 들판에서 싸우면 이기고, 성을 공격하면 취하니, 천하가 우리 병사를 보고 '전 즉 중요함이 없고, 나아간 즉 돌아보는 법이 없다'고 하며 그 위에 두려워 떨며 더불어 싸우려 하지 않았다. 이번 燕京을 정벌하고 변경에 나아갈 때 우리 군사의 위세가 너희 八大臣에게 달려있을 즉 너희는 짐의 말을 삼가 유념하라 하였다.”⁴⁰⁾

황태극은 滿族 정권을 세울 수 있었던 힘의 근본이 滿族의 騎射 능력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騎射에 편리한 그들의 전통 복식을 寬衣大袖한 漢族 복식으로 바꾸면 이러한 민족 특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

40)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32 第8頁 崇德元年(1636) 11月癸丑 “…先時儒臣巴克什達海, 庫爾纏, 屢勸朕改滿洲衣冠. 效漢人服飾制度. 朕不從, 輒以爲朕不納諫. 朕試設爲比喻. 如我等於此聚集. 寬衣大袖, 左佩矢, 右挾弓. 忽遇碩翁科羅巴圖魯勞薩, 挺身突入. 我等能禦之乎. 若廢騎射, 寬衣大袖, 待他人割肉而後食. 與左手之人, 何以異耶. 朕發此言, 實爲子孫萬世之計也. 在朕身豈有變更之理. 恐日後子孫, 忘舊制, 廢騎射, 以效漢俗, 故常切此慮耳. 我國士卒, 初有幾何. 因嫻於騎射, 所以野戰則克. 攻城則取. 天下人稱我兵曰, 立則不動搖. 進則不回顧. 威名震懾. 莫與爭鋒. 此番往征燕京出邊, 我之軍威竟爲爾八大臣所累矣. 故諭爾等, 其謹識朕言.”(밑줄은 필자 강조)

음해 太宗은 諸王貝勒에게 滿族 복식 보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崇德2년(1637) 4월, 또 諸王貝勒에게諭하기를, '옛날 金 熙宗과 亮이 祖宗의 時와 衣冠儀度를 폐하고 漢人의 풍속을 따라, 마침내 漢人의 衣冠을 입고 本國의 言語를 모두 잊게 되었다. 世宗대에 다시 舊制 衣冠을 회복하였다. 또 言語와 騎射를 수시로 子孫에게 學習하도록 권면하였다. …우리나라는 騎射를 업으로 하였다. 지금 만약 때로 弓矢를 가까이 하지 않고 宴樂에 빠지면, 田獵行陣의 일이 쓸모없게 될 것이니, 武備를 무엇을 통해 익힐 수 있겠느냐. 무릇 射獵은 무력을 연마하는 법도요, 복식제도는 나라를 세우는 첩경이다.”⁴¹⁾

여진족 선조 정권인 金代에, 熙宗 이후 漢族 복식을 차용하고 漢語를 사용하다가 世宗때 다시 본래의 풍속을 회복하려 하였다. 皇太極은 金 世宗의 정책을 본으로 삼아 衣冠·言語·騎射 등의 민족 특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복식제도는 나라를 세우는 첩경”이라고 할 만큼 복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후대 자손들에게 “조종의 제도를 바꾸거나 버리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2. 滿族 복식예의 유교적 등급질서 반영

중국 복식제도에서의 등급질서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漢代 賈誼를 들 수 있다. 賈誼는 秦이 멸망한 역사적 교훈을 지적하며 “禮로 다스리면 나라는 안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禮治論을 주장하였다.⁴²⁾ 賈誼가 禮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중시한

41)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34 第26頁 崇德2年(1637) 4월丁酉(28일) “又諭諸王貝勒曰. 昔金熙宗, 及金上亮, 廢其祖宗時, 衣冠儀度. 循漢人之俗. 遂服漢人衣冠. 盡忘本國言語. 治至世宗, 始復舊制衣冠. 凡言語, 及騎射之事, 時諭子孫勤加學習. 如元主馬大郭, 遇漢人訟事, 則以漢語訊之. 世宗聞之, 以其未忘女直之言. 甚爲嘉許. 此本國衣冠言語, 不可輕變也. 我國家以騎射爲業. 今若不時親弓矢, 惟耽宴樂. 則田獵行陣之事, 必致踈曠. 武備何由而得習乎. 蓋射獵者, 演武之法. 服制者, 立國之經.”(밑줄은 필자 강조)

이유는 禮의 기본 성격이 君臣·上下·貴賤·尊卑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⁴³⁾ 이를 통해 중국의 군주는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⁴⁴⁾ 그는 의복에 이 구별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⁴⁵⁾ 전문관리를 두어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⁴⁶⁾

滿族 전통 복식은 본래 신분과 등급에 따른 구별이 없었다.⁴⁷⁾ 황제 권력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필요성 속에 太宗 皇太極은 漢族 관리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滿族 복식에 등급질서 반영이라는 복식정책 이념을 세우게 된다. 天聰5년(1631) 12월, 漢臣 甯完我⁴⁸⁾가 辨服制의 중요성을 제출하였다. 辨服制란 복식으로 신분과 등급을 구분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服制一節은, 皇上이 滿漢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첫

42) 朱日耀 著, 鄭貴和 譯, 『傳統中國政治思想史』, 부산:新知書院, 1999, pp.214-219

43) 조민환, 「儒家美學의 先後本末論의 구조를 통해 본 禮樂論-禮樂의 政敎의 效用性을 중심으로-」, 『儒敎思想研究』, 제4·5집, 1992, p.22

44) 『賈誼新書』服疑 “建法以習之, 設官以牧之, 是以天下見其服而知貴賤, 望其章而知其勢。□人定其心, …於是主之與臣, 若日之與星。臣不幾可以疑主, 賤不幾可以冒貴, 下不凌尊, 則上位尊, 臣不踰級, 則主位安, 謹守倫紀, 則亂無由生。”(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태양과 별처럼 되어 신하들은 군주를 의심하지 않게 되고, 도적의 무리들이 고귀한 지위를 사칭하지 않게 되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침범하지 않게 되어 윗사람의 지위가 존경을 받게 되고 신하들은 자기 범위를 넘지 않게 됨으로써 군주의 지위는 안정되는 것이다)

45) 『賈誼新書』等齊 “人之情不異面目, 狀貌同類, 貴賤之別, 非天根著於形容也。所持以別貴賤明尊卑者等級勢力衣服號令也”(인간의 본성이나 감정은 비슷하고 얼굴모양은 흡사하므로 귀천의 구별은 이러한 것에 의해 구별될 수 없다. 귀천을 구별하고 준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급·세력·의복·호령등을 이용해야 한다.)

46) 『賈誼新書』服疑 “各處其檢人循其度, 擅退則讓, 上僭則誅”

47) 申忠一, 『建州紀程圖記解說』(p.25) “修羊才曰, 爾國宴享時, 何無一人身穿錦衣者也。臣曰, 衣章所以辨貴賤, 故我國軍民不敢着錦衣。豈如爾國上下同服者乎。羊才無言”

48) 『清代全史』第1卷(1995), 전계서, p.332

째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滿洲國人은 언어가 같으므로, 貴賤이 자연히 구별됩니다. 漢官은 滿語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합니다. 혹은 능욕을 당하고 상심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皇上은 漢官을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하시며 성심이 지극하시지만, 國人(만주인)은 반대로 업신여기고 천시하니, 장차 어떻게 일체임을 보여 遠人들을 불러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서둘러 服制를 分辨하고, 腰牌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우면서 효과는 가장 큰 것이니 皇上이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⁴⁹⁾

滿漢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滿·漢族에 관계없이 조정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등급질서가 분명한 관복제도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甯完我 뿐만 아니라 天聰6년(1632) 전후, 王文奎·王舜(共水)등의 漢官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衣冠服制 정립안이 제기된다. 王文奎는

“自古로 國家에는 반드시 엄격한 上下尊卑의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官民에 구별이 없습니다. 高官의 服飾은 아래로 僕從의 복식과 같습니다. … 바라건대, 皇上은 衣冠을 제정하시어 天下後世로 하여금 聖哲을 알게 하소서. 이로써 主權은 높아지고, 백성은 안정되어 國勢가 굳건하여질 것입니다.”⁵⁰⁾

49)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10 第35頁 天聰5年 12月 壬辰 “至服制一節, 是皇上陶鎔滿漢之第一要務。滿洲國人, 語言既同, 貴賤自別。若夫漢官, 祇未諳滿語, 嘗被訕笑。或致凌辱。至傷心墮淚者有之。皇上遇漢官, 每溫慰懇至。而國人反陵轍作踐, 將何以示一體而招徠遠人耶。宜急分辨服制, 造設腰牌, 此最簡最易, 關係最大者, 皇上勿再忽之也。”

50) 『天聰朝臣工奏議』卷上 王文奎「條陳時事奏」 “自古有國家者, 必嚴上下尊卑之別, 非但以美觀聽, 實馭世大機權也。竊見我國官民毫無分別, 貧而富者, 即氓隶而冠裳之飾, 上等王侯; 清而貧者, 即高官而服飾之混, 下同僕從。…伏乞皇上毅然獨斷, 弁制衣冠, 使天下後世知聖哲所爲, 超出尋常, 使愚民亦知富有百萬, 而終不得與職官并。此則主權尊, 民志定, 賢愚僉奮, 國勢愈隆。”

고 하였고, 王舜(共水)은

“自古로 冠服에는 구별이 있어 貴賤과 尊卑를 구별하는 것이니 古帝가 이로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帝王의 冠服은 公侯와 같지 않고, 公侯의 冠服은 散官과 같지 않습니다. 서민의 家産이 백만이라 하더라도 서민의 冠服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 공이 있는 자는 衣冠이 평인과 같을 수 없습니다. 禮는 조금의 참월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옛날 創業帝王은 반드시 먼저 官服을 분별케 하고, 等威를 엄격하게 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貴한 것을 중히 여기며 富한 것을 중히 여기지 않게 하였으며, 賤한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貧한 것을 수치스러워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영웅호걸은 반드시 尊重함을 얻고, 이익을 좇는 무리들은 자연히 가볍고 천하게 되니, 제왕이 천하를 취하는 것이 이러한 원리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後金)의 冠服은 혼란스럽게 뒤섞여 貴賤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樂戶(천인계급)들이 관을 쓰고 또한 좋고 귀한 것에 힘쓰니, 사람들이 부를 중히 여기고, 귀를 중히 여겨 汗제(汗)가 큰 체통을 잃었습니다.”⁵¹⁾

두 사람 모두 복식에서의 君臣·官民·貴賤 등 신분에 따른 등급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그 주도적 사상은 漢族 전통의 유교적 봉건등급사상이다.

皇太極은 天聰7년(1633) 6월, ‘入朝 복식제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衣冠은 定制가 있다. 짐은 服色을 구별함으로써 각각 바로 분별하고자 하였다. 國人이 다시 만든 것이 쉽지 않아 이로써(복식으로) 분별이 되지 않는다. 지금 國中 冠服이 일치하지 않고, 각각 임의대로 하니 이를 공경하지 않음이다. 특별히 入朝 冠服制를 정한다.”⁵²⁾

51) 『天聰朝臣工奏議』卷上 王舜(共水)「陳末議奏」“自古冠服之區別, 貴賤尊卑系之, 乃古帝治世之權也. 帝王之冠服, 不同公侯, 公侯之冠服, 不同散官. 若是庶民, 卽家資百萬, 不過庶民之冠服已耳! 惟有功于國者, 衣冠不等平人, 所以禮不容毫髮僭越. 故創業帝王, 首必辨官服, 嚴等威, 使舉國之人, 重貴不重富, 恥賤不恥貧, 英雄豪杰必得尊重, 利徒鄙夫, 自然輕賤, 此帝王所以取天下如拾芥也. 今我國(金國)冠服混淆, 貴賤難分, 甚有樂戶穿戴, 更強于良貴, 所以人重富重貴, 而汗大體失矣.”

“服色을 구별함으로써 각각 바로 분별하고자 하였다”고 하여 복식제도 제정 목적이 봉건적 등급질서 확립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太宗 皇太極은 이민족을 경시하는 漢族의 華夷思想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한편 滿族 전통 복식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滿族의 힘의 근원이 騎射에 있고 복식은 바로 이 騎射와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 풍속이었기 때문이었다. 滿族 전통 복식의 포기는 곧 만족 기반의 상실이라는 인식이 민족 복식 보존 정책을 이끌어낸 것이다. 또한 八旗制의 旗主로서 출발하여 제한된 권력을 지닌 滿族 황제로서 등급질서를 반영한 복식의 등급질서 반영을 통해 황제의 절대권력을 제도적으로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IV. 입관 이후 계승된 皇太極의 복식정책 이념

明 崇禎17년(1644) 정월 1일, 농민군 李自成이 西安에서 정식으로 稱帝建元하고 國號를 大順으로 하였다. 4월 18일, 이자성의 군대는 수도 서쪽에 있는 明의 왕릉을 도굴하고 수도의 교외를 점령하였다.⁵³⁾ 山海關을 지키고 있던 明 장수 吳三桂는 淸軍에 도움을 요청한다. 4월 20일, 中原에 야심을 품고 있던 淸은 明朝를 대신하여 중국의 국난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山海關으로 진입하여 이자성군을 격파하고 華北의 각 지역

52) 『大清太宗文皇帝實錄』卷14 第15,16頁 天聰7년 6월 “上諭曰, 我國衣冠, 當有定制. 朕向欲辨服色. 正各分. 慮國人更製不易. 是以未及分別耳. 今國中冠服不一. 各任意辦製, 甚非所以肅觀瞻也. 特定入朝冠服之制. 凡朝期俱用披領. 平居止用袍自八大臣以下, 庶人以上, 毋得戴尖纓帽. 冬則戴綴纓圓皮帽. 夏則用涼帽. 其黑狐大帽, 係御賜者, 入朝准戴. 平居俱行禁止. 卽大臣自製者, 亦不准戴. 至緞靴, 惟總兵官以下, 旗長以上, 入朝許容之. 庶人不許. 御前侍衛, 及貝勒下護衛, 與新附蒙古, 不禁. 凡一應人等, 綿掛皮褂無袖者, 及腰帶之寬者, 止許出外服之. 平居不許. 其綿帽止許襪蓋. 行路居家, 俱不許用. 著永行嚴禁.”

53) Wakeman, Frederic, Jr著, 김의경 譯, 『중국제국의 몰락』, 서울:예전사, 1992, p.84

을 점령하게 되었다.⁵⁴⁾

어린 順治帝를 대신하여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攝政王 多爾袞은 5월 2일에 北京에 진입하여 北京을 수도로 선포하고 古都인 瀋陽으로부터 順治帝 福臨을 맞이하여 왔다. 이 해가 順治元年(1644)이다. 10월 1일, 7세의 福臨은 북경에서 두 번째로 등극하고 전 중국을 통치하는 滿族 황제가 되었다.⁵⁵⁾

入關 이후의 淸朝 황제들은 전통 복식 유지 및 등급 질서 반영이라는 太極의 복식정책 이념을 견지하였다. 順治4년 정월, 漢官에게도 滿官의 복식제도를 따르게 한 것⁵⁶⁾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世祖 順治年間에는 전제 황권의 강화를 위해 복식에서도 상세한 등급 질서가 반영된 제도를 제정하였다.

順治18년(1661) 정월, 世祖가 죽고 셋째아들 聖祖 康熙帝가 즉위하였다. 康熙는 金世宗이 여진 말로 왕자들에게 노래를 부른 뒤 “여진 말과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근본을 잃은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것⁵⁷⁾을 본받아, 노래 대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滿族 전통 춤을 추었다. 康熙49년(1710) 정월, 황제는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기전에 禮部에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만주연회의 가장 큰 의식인 Maksin(춤)은 滿洲의 가장 고귀한 위엄을 갖춘 의식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주 諸王大臣들이 행하여 왔다. 올 해 어머니는 70세요 나는 57세이니 내가 직접 춤을 추고 어머니께 술잔을 올리기를 원한다.”

54) 김도현, 「정조정권의 성립과 발전」, 『강화중국사』Ⅳ, 서울: 지식산업사, 1989, p.159

55) 孫文良, 「論清初滿漢民族政策的形成」, 『復印報刊資料明清史』(北京: 中國人民大學), p.58

56) 『大清世祖章帝實錄』卷30 第9頁 順治4年(1647) 正月壬戌 “禮部奏言, 漢官亦應如滿官例, 照頂帶用坐褥. 從之.”(禮部에서 상주하기를, ‘漢官도 마땅히 滿官의 예에 따라 頂帶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그대로 하였다)

57) 『金史』世宗本紀 大定13年 4월 乙亥 “上御睿思殿, 命歌者, 歌女直詞, 顧謂皇太子及諸王曰, 朕思先朝所行之事, 未嘗暫忘, 故時聽此詞, 亦欲令汝輩知之, 汝輩自幼惟習漢人風俗, 不知女直純質之風, 至於文字語言, 或不通曉, 是忘本也, 汝輩當體朕意, 至於子孫, 亦當遵朕教誡也”

그날 황제는 어머니께 다가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술잔도 올렸다.⁵⁸⁾ 황제나 부족장이 춤을 추는 것은 민족의 전통 문화이며 康熙는 민족 문화를 스스로 보여 주며 민족 황제로서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⁵⁹⁾

[그림 1]은 『淸會典圖』에 수록된 청대 궁중에서 행해진 민족 전통 舞 장면으로⁶⁰⁾ 滿族 전통 복식을 토대로 제정된 청조 관복을 착용하고 있다.

高宗 乾隆帝 역시 滿族 전통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다. 乾隆帝는 乾隆20년(1755) 3월 漢族의 풍습에 물들어 가는 것을 경계하며⁶¹⁾ 5월에는 왕자들에게 만주어, 騎射와 같은 滿族의 훌륭한 전통을 지킬 것을 명령하는 칙령을 내렸다.⁶²⁾

[그림 2]의 『馬術圖』는 乾隆20년(1755)에 그려진 것으로 乾隆帝가 騎馬術을 보고 있는 광경이다. 복식에 대해서도

“北魏, 遼, 金, 元이 모두 漢衣冠으로 바꾸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망하였다”⁶³⁾

고 하며 太宗과 마찬가지로 민족 복식의 보존 문제

58) 『大清聖祖仁皇帝實錄』卷241 第3頁 康熙49年(1710) 正月 “諭禮部, 蟒式舞者, 乃滿洲筵宴大禮, 至隆重歡慶之盛典. 向來皆諸王大臣行之. 今歲皇太后七旬大慶. 朕亦五十有七. 欲親舞稱觴. 是日, 於皇太后宮進宴. 皇太后升座. 樂作. 上近前起舞進爵”

59) Yu, Siu Wah, 「The Meaning and Cultural Functions of Non-Chinese Musics in the Eighteenth-Century Manchu Court」, Ph.D.dis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1996. pp.127-128

Yu, Siu Wa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anchu Dance as Ritual Music in the 18th Century Manchu Court」, 『The Second International Council for Asian Music-a' ak · yayue · gagaku · nhaahac』(Seoul), 1997, pp.249-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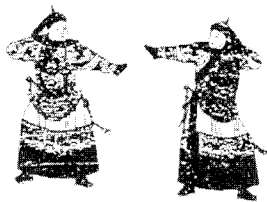
60) 『淸會典圖』卷56 樂26

61) 『大清高宗純皇帝實錄』卷485 第15-16頁 乾隆20年(1755) 3月 庚子 “近來多效漢人習氣”

62) 『大清高宗純皇帝實錄』卷489 第4-5頁 乾隆20年(1755) 5月 庚寅 “嗣後八旗滿洲, 須以淸語騎射爲務”

63) 『中國歷代經籍典』, 第222經籍考12卷, 揚州: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3 중의 『欽定皇朝禮器圖式』序文

喜起舞隊舞圖



[그림 1] 清 宮中舞 (『清會典圖』)



[그림 2] 滿族의 騎射 (『中國少數民族文化史圖典』東北卷, 廣西教育出版社, 1999, p.249)

를 나라의 운명(國祚)과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

V.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의 복식정책 이념은 민족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清朝 통치자는 이민족의 문화를 멸시하고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漢族의 華夷사상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한편 滿族의 구습을 개혁하고 전통 문화를 발전시켜 滿族 문화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太宗 皇太極은 滿族의 힘의 근원이 騎射에 있고 복식은 바로 이 騎射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 풍속이기 때문에 민족 복식의 포기는 곧 민족 기반의 상실이라고 생각하고 민족복식 보존정책을 편다. 또한 민족 전통 복식에 상세한 등급질서를 반영하여 봉건 왕조의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황제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만족에게는 전통복식을 유지하게 하고 한족에게는 민족 복식을 차용케 한 민족 전통 복식 보존정책과 민족 복식을 기초로 한 복식제도 제정 및 시행이라는 청

조 복식정책의 양대 산맥은 이러한 복식정책 이념속에서 출현한 것이다. 청의 복식정책 내용과 복식정책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논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오늘날 전 세계가 열린 체제 속에서 국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도 높은 외교정책을 펴나가는 시점에 자국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 의미에서의 민족정체성 확립과 민족 문화를 토대로 한 시장 창출이라는 과제 앞에서 시대적, 정치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清朝 복식정책의 기본 이념은 깊이 상고되어야 할 논제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大清歷朝實錄』.
- 『滿文老檔』.
- 『清大史』第 1, 2卷,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5.
-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편, 「강좌중국사」, 서울: 지식산업사, 1989.